

1. 개정이유

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고,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개선(안 [별표 14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

같은 표 제3호나목 1) 및 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모델수 5개 이하: $150,000\text{원} \times \text{품목수} + \text{출장비}$

2) 모델수 6개 이상: $150,000\text{원} \times \text{품목수} + (\text{품목별 인증모델수} - 5) \times 20,000\text{원} + \text{출장비}$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4] 수수료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tr> <td>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</td><td>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<중략></td></tr> <tr> <td>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</td><td>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<이하 생략></td></tr> </table>	구분	수수료	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	<중략>		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<이하 생략>		[별표 14] 수수료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tr> <td>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</td><td>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<중략></td></tr> <tr> <td>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</td><td>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<이하 생략></td></tr> </table>	구분	수수료	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	<중략>		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<이하 생략>	
구분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
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																				
<중략>																					
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																			
<이하 생략>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
1.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.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: 55,000원 나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. 이 경우 제5호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검사"로 본다)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																				
<중략>																					
3.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가. 제품검사 비용: 제5호에 따른 수수료(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 경우 제5호에의 "시험·검사"를 "제품 정기검사"로 본다) 나. 공장검사 비용: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 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																			
<이하 생략>																					